

생산일 : 2000.10.17(화)

報道資料

題目 : 預金部分保障制度 施行方案 확정

主要內容

- ◇ 財政經濟部는 10.17(화) 오전 07: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預金部分保障制度 施行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黨政協議를 가졌음
 - 李海瓚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등 民主黨 의원들과 진 념 財政經濟部長官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주요간부들이 참석
 - 예금 부분보장제도의 施行與件과 향후 推進方向 등 예금보험 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 ◇ 黨·政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市場規律을 확립하기 위해 預金部分保障制度를 예정대로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다만,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보장한도의 상향조정과 결제성 자금에 대한 3년간 전액보장기간 연장 등의 보완 조치를 마련도록 하였음

* 별첨: 預金部分保障制度 施行方案(부분보장관련 Q&A)

資料生産: 財政經濟部 金融政策局 銀行制度課(503-9254~5)

財政經濟部 公報官

預金 部分保障制度 施行方案

2000. 10. 17(화)

財政經濟部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 ◇ '97말 도입한 예금전액보장조치의 시한이 금년말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부분보장제도로 전환

1. 부분보장제도 施行의 必要性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필요
 - 그동안 예금의 전액보장에 따라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확대를 추구하던 금융기관의 경영행태를 근절
 - 경영의 내실화로 금융부실의 축소를 유도하여, 공적 자금의 반복적 투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
-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
 - 우량 금융기관의 자금이동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가려지게 되면서 합병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
-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대내외신인도 제고
 -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확인으로 국내외투자자의 신뢰도 향상 도모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97말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

* 예금보험제도가 있는 68개국중 58개국이 부분보장제도 시행

2.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향

- ◆ 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 등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 정부는 부분보장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구조 조정의 가속화 등 금융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

- 금융권의 자금은 우량기관 등으로의 이동이 계속될 전망이나, 구조조정이 연내 마무리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보다 제고되면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① 은행권 클린화를 연내에 완료되므로 은행도산을 우려한 은행권예금(금융권 총예금의 91%)의 이동유인은 크지 않을 것임
- ②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단위가 크지 않아 영향이 적고, 이미 부분보장에 적용중
 - 거액예금이 많은 종금사는 이미 마련된 대책에 따라 예보자회사 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
-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자유화, 금융종합파세 등과 맞물려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응

3. 부분보장제도 시행이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 부분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금자의 예금은 계속 보호받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은 일부 거액예금자와 법인예금자 등 소수예금자에 국한되는 문제

< 예금규모별 비중 >

	은행(개인)	은행(법인)	종금	금고	신협
2천만원 이하	45.8	1.0	1.3	40.1	51.7
5천만원 이하	66.3	2.2	3.5	52.8	92.6
5천만원 초과	33.7	97.8	96.5	47.2	7.4

* 은행예금은 10개 은행의 표본조사결과, ** 예금금액기준

- 특히 예금보험금은 금융기관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것임
 - 즉,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금융기관이 정상 영업하는 한 1차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500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자는 정부가 전액을 보호하는 것임
 - 따라서 합병, 금융지주회사 편입, 예보 자회사 전환, M&A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은 계속 영업하게 되므로 예금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정부는 연말까지 2단계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철저한 건전성감독을 통해 부실재발을 방지하여
 -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우량금융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4. 부분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

◇ 2001.1.1일 시행, 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예: 각 은행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이자의 결제성자금(별단·당좌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2003말까지) 전액보장

□ 예금가입시기와 관계없이 2001.1.1일 이후 금융기관에 보험사고(파산, 영업정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하게 됨

□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 까지 보호

○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지점별, 금융권별이 아님) 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계좌별, 가족별이 아님: 부부 합산, 가족합산 등은 없음)

(예) 甲은행에 5,000만원, 乙은행에 5,000만원 등으로 가능하고,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등 타 금융기관도 각 금융기관(회사)별로 적용됨

○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중 낮은 율로 계산하여 합산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현재 약 6.83% 수준

< 보장한도의 적정성 문제>

① 부분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되는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충분한 수준으로 조정(1인당 GDP의 5배 수준)

* 미국도 최초 도입시에는 GDP의 9.6배 수준으로 정한 바 있음

② 5천만원 인상으로 예금자의 대부분이 보호되고, 예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개인예금의 60~65%, 금고·신협도 50~90% 수준이 보호되는 적정 수준

※ 각국의 예금보호한도는 금융발전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
(1인당 GDP의 0.5~4배 수준)

○ 보호되는 범위도 예금액의 30~80% 수준으로 다양

○ 도입초기에는 보장한도를 높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미국) 최초 도입시(1934) 1인당 GDP의 9.6배, 1980년 현행 한도
(10만불) 책정시 8배, 현재는 3.2배

* 금액기준으로 은행예금의 65.2% 보호

(일본) 부분보장전환시(2002. 4월) 1,000만엔으로 1인당 GDP의 3.3배

□ 수표지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결제성자금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된 예금은 2003년 말까지 전액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

○ 당좌수표 결제를 위해 예치한 당좌예금 및 자기앞수표의 결제를 위해 예치한 별단예금 등

□ 다음의 금융상품은 2001년부터는 보호되지 않음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7.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98.7.31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청약자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등

* '98.7.25일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98.8.1 이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이미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었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부보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

5. 자금이동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 은행·종금은 연말까지 구조조정 추진으로 클린화가 마무리되고, 금고·신협도 보장한도 인상으로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장 받게 되어 자금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심리적 요인으로 자금이동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으로 불안요인을 초기에 진정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조절대출제도를 활용하고, 필요시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한국은행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Q&A

- 목 차 -

<개 관>

1. 부분보장제도의 시행 필요성
2. 일본에서도 최근 부분보장제 시행을 1년 연기
3. 보호한도·보호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적용할 필요
4.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거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증거이며 공적자금부담도 증가
5.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도 혜택계층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음
6.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 도입·필요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시행시기 관련)

7. 금융·기업부실이 아직 남아 있고 고유가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분보장제도는 시기상조
8. 부분보장제 시행시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연말에 집중이동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
9.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

10. 부분보장제도 시행시 시중자금이 안전한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은행으로 이동할 우려

(예금자 이해 문제)

11. 예금자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예상
12. 예금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접근이 어려움

<부분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

13. 어떤 상품이 보호되는가?
14.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상품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는?
15. 결제성 자금의 전액보장 3년 연장의 의미
16. 금년안에 가입하면 보호되는가(적용시점 관련)?
17.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예금자별인가 계좌별인가? 금융기관별인가 지점별인가?
이자는 약정이자가 보호되는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18.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가?

1. 부분보장제도의 시행 필요성

- 예금전액보호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의 고위험·고수익 추구를 조장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참여자의 시장규율을 저해하게 됨
 - 아울러 전액보호는 다수납세자의 부담인 공적자금으로 소수의 거액예금자를 보호하는 불합리한 소득분배를 초래
-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도 부분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금융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가 한시적으로 전액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위기가 극복됨에 따라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예정임
- 따라서,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해이 방지와 시장규율 제고를 통한 선진금융시스템의 구축,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적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부분보장제로의 전환이 필요
 - 앞으로 정부주도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장 규율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부분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

2. 일본에서도 최근 부분보장제 시행을 1년 연기

□ 일본은 2001.3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정리(Pay-off)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액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작년말 전액보장 시한을 2002.3말까지 1년 연장기로 결정

* 결제성자금(요구불예금 등)은 2003.3말까지 전액보호

□ 그러나, 일본의 연기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수상황에 기인

① 우리와 달리 실물경제의 회복이 이제 시작단계

* 99년 GDP 성장률: 한국 10.7%, 일본 0.2%

② 금고·신용조합 등 가장 문제가 되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 신용조합의 감독권은 금년 4월에야 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청으로 이관

③ 부실기관정리시 보험금지급방식(Pay-off)을 활용한 선례가 없어 예금자의 인지도 부족

-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근본적 해결 대신 사업양도나 합병 등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

④ 우리의 경우 개혁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정치권·이익단체의 압력 등으로 인해 강력한 개혁추진이 어려운 상황

□ 외신과 일본 금융계는 동 조치로 인해 금융개혁이 후퇴하고, 일본 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00.9.8일 Moody's는 일본의 신용등급(엔화차입)을 한단계 하향조정(Aa1→Aa2)

3. 보호한도·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적용할 필요

□ 기업금융전문기관 또는 중소형 금융기관 예금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격한 수신이탈 없이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호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은

- 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취지가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만큼 금융권별로 소액 예금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 ② 보호한도를 차등화할 경우 보호한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자금이동유인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의 왜곡현상도 우려

⇒ 이러한 이유로 예금보험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equal treatment)

□ 부분보장제도의 적용시기를 금융권별로 차등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권간 자금왜곡 현상이 예상되고 공정한 경쟁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 발생

* IMF도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4.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거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증거이며 공적자금부담도 증가할 것임

- 먼저 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며, 부분보장제도는 통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마무리단계에서 도입되는 만큼 오히려 금융개혁의 큰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금융위기로 전액보장제도를 실시했던 12개국중 부분보장 제도로 전환한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며 이들 나라도 전환되기까지 4년 내지 6년이 걸렸음
- 우리의 경우 부분보장제도 도입여건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일부 남아 있는 만큼
 - 시장규율확립을 위해 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보장한도 상향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보호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개별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 한도인상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음
- 보호한도 상향조정으로 일부 예금자가 추가로 보호되기는 하나, 이는 금융시장안정과 전체적인 '공적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임

5.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도 혜택계층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음

- 금융권의 예금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크지 않을 전망
 - 그러나, 금융권별 특성과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도인상은 자금시장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①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이 많은 법인예금을 제외한 개인 예금을 보면 5,000만원미만이 66.3%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
- * 미국의 경우 은행예금의 65.2%(99년, 금액기준)가 보호
- ② 부분보장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한계구간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기관의 수신안정과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③ 또한, 부분보장제도 시행의 영향이 없는 일반 소액예금자들까지 막연한 불안심리와 루머를 촉아 불필요하게 예금을 인출하는 심리적공황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

6.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보험료율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 정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및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 개혁의 촉진을 위해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 그동안 차등화제도의 도입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음
- 다만, 도입시기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7. 금융·기업부실이 아직 남아 있고 고유가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분보장제도는 시기상조

- 통상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의 경우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전액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금융위기가 어느정도 극복되면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 IMF 등도 충분한 여건이 성숙된 이후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 부분보장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충분히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 이상적인 여건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어느정도의 여건이 갖춰지면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 우리의 경우 아직 다소의 불안요인은 있으나 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경제여건은 어느정도 갖춰진 상황
 - ①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기초기 상황에 비하여 크게 개선
 - ② 적기시정조치, 경영공시제도 등이 개선되고 부실금융기관 처리능력도 제고
 - ③ 예금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도시행을 예고
- 시행을 연기할 경우 개혁의지에 대한 대내외 불신 등으로 오히려 시장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장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추이를 주시하고 있음

8. 부분보장제 시행시 단기부동화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연말에 집중이동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

- 자금이동우려는 막연한 불안심리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실제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① 자금이동은 이미 우량은행 중심으로 상당부분 진행

* 1~9월중 은행권으로 약 75조원의 자금이 유입

② 예금보호비중이 낮은 것은 선진국과 달리 채권시장이 발달되지 못해 법인자금이 대부분 은행예금으로 운용되는 데 기인

- 개인예금만 볼 경우 5천만원 한도로 66.3%가 보호되고, 나머지 일부 거액예금도 분산예치 등으로 대부분 보호가능
- 법인예금의 경우 대부분 은행·종금과 거래하고 있는 바, 비우량기관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연내에 클린화시킬 예정이므로 자금이동의 유인이 크지 않을 것임

* 예금금액 기준 보호대상예금 비중(8월말 기준, %)

	은행개인	은행법인	종금	금고	신협
5천만원 이하	66.3	2.2	3.5	52.8	92.6

③ 작년과 비교할 때 최근 시중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성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 1~9월중 은행 저축성예금 증가액: 65.5조원(23.7%)

- 저축성예금의 경우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 따라 만기구조가 장기안정적으로 가는 추세

* 은행권 저축성 예금의 만기구조

(조원, %)

	정기예금				정기적금			
	6월미만	6월~1년	1년이상	계	6월~1년	1년~3년	3년이상	계
99.6말	33.8	28.4	67.2	129.4	0.6	7.1	6.2	13.9
	(26.1)	(21.9)	(52.0)		(4.6)	(50.9)	(44.5)	
99말	37.7	29.6	80.0	147.3	1.7	10.1	5.5	17.3
	(25.6)	(20.1)	(54.3)		(9.8)	(58.5)	(31.7)	
'00.6말	38.6	41.5	106.2	186.3	1.0	10.8	7.1	18.9
	(20.7)	(22.3)	(57.0)		(5.2)	(57.4)	(37.4)	

*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원화예수금 기준

-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재예치 등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은행예금의 만기구조

(조원, %)

	3개월미만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합계
99말	127.0	28.8	38.5	68.4	262.7
(비중)	(48.3)	(11.0)	(14.7)	(26.0)	(100)
2000.6말	121.1	40.1	59.4	86.4	307.0
(비중)	(39.5)	(13.1)	(19.3)	(28.2)	(100)

*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원화예수금 기준

9. 중소형금융기관의 경우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

- 부분보장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소형금융기관이라 하여 타격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음
- 다만, 그동안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미진하였으므로,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중소형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 한편, 건전한 중소형금융기관이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

10. 부분보장제도 시행시 시중자금이 안전한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은행으로 이동하는 문제점 발생

- 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환자유화·종합과세 등과 맞물려 자본의 해외유출(capital flight)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바,
- 심리적불안에 따른 해외유출유인이 있기는 하나, 금리차·환위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국내 우량은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 다만,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유출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보완조치를 통해 대비
-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외국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 외은지점의 수신규모가 미미(7.6조원, 은행총예금의 2.0%)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며
- 외은지점이 유치한 자금도 결국 국내기업대출 재원 등으로 이용되며,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은지점의 적정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볼 때 향후 증가추이를 주시하며 대응해나가겠음

11. 예금자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예상

- 부분보장제도 전환은 97년 말 전액보장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미 예고된 사항으로 3년의 기간이 있었음
 - 그동안 주요 정책발표, 언론홍보, 금융기관에의 안내 책자·포스터 배치,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개별 예금자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해 치속적으로 제도변경을 예고·홍보하여 왔음
- 특히, 예금자별 특성을 감안할 때 예금자의 이해부족으로 부분보장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① 예금보험제도 변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인·금융기관 예금자 등 고액예금자의 경우 스스로 제도변경을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그동안의 홍보기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정보습득기회가 제공되었음
 - ② 소액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되어 제도 변경의 큰 영향은 사실상 없음
- 다만, 예금자의 막연한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국민홍보를 지속하여 나갈 계획

12. 예금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접근이 어려움

- 일반적으로 우량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기 자본비율(BIS 8%)을 충족하면서 부실채권규모가 적고 이익을 많이 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 효율적인 내부관리시스템과 명확한 경영비전을 갖추어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정부는 예금자에게 금융기관 경영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음
 - 재무 및 손익상황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감독당국은 은행별 BIS 비율, 부실채권 규모,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언론보도 또는 인터넷 게재)
 - 특히, 정부는 최근 엄격한 FLC기준에 따른 잠재부실현황과 이를 반영한 BIS비율 등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BIS비율, ROA, ROE 등 주요 경영지표가 분기별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
-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소액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

13. 어떤 상품이 보호되는가?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지정된 것만 예금보험기금에 의해 보호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은행 상품

○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 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 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 2000년 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7.24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실적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 목적신탁 등) '98.7.25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 증권회사 상품

-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위탁자예수금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 수익자예수금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 신용거래계좌설정담보금 · 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 · 세금우대증권저축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 2000년 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 ·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98.7.24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98.7.25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 보험회사 상품

-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 중 퇴직보험계약

○ 2000년 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부터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98.7.31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재보험계약, '98.8.1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 종합금융회사 상품

○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에서 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 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 상호신용금고 상품

○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표지어음

□ 신용협동조합 상품

○ 2001년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 출자금 · 예탁금 및 적금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공제상품

14. 투신사와 은행의 신탁상품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는?

- 투신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신사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 투신사 상품의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으로서 '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은행의 신탁상품은 원금보전형 신탁의 경우 예·적금과 같이 보호되지만 실적배당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투신사 상품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임
 - 보호받는 원금보전형 신탁 상품 :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 보호받지 못하는 실적배당 신탁상품 :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등) '98.7.25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 농·수협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농·수협 단위조합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수협 단위조합 신용사업 부문에 가입한 예금은 동 예금의 소멸시까지 보호됨
 - 참고로 농·수협 단위조합의 경우 각 중앙회의 보호 기금에서 일정 한도까지 보호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다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에 의하여 거래 금고가 2000년 말까지 파산하는 경우 1998년 2월 7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1998년 2월 8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보호받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3,000만원까지의 원리금을 보호받게 됨

15. 결제성 자금의 전액보장 3년 연장의 의미

- 은행파산 등으로 결제성자금의 적기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연쇄도산 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일본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결제성자금에 대해서는 2003.4월까지 1년간 더 전액보호키로 결정
 - 반면, 결제성자금만을 차등보호할 경우 시중자금이 결제성자금으로 집중되는 자금왜곡 등 부작용도 예상
- 정부는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예방과 부작용최소화를 조화하기 위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순수한 결제성자금(당좌예금,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전액보호하기로 하였음

* 결제성자금 규모 및 수신이자 최고율

(2000.9말 기준, 조원, %)

구 분	규모	이 고 율
-가계당좌예금(A)	0.6	연 1.0%.(3개월 평잔 100만원 초과시 3.0%)
-별단예금(B)	18.4 (4.8)	무이자 원칙(단, 이자지급 필요시 연 2.0%)
-당좌예금(C)	1.5 (0.4)	무이자
결제성자금계	20.5 (5.3)	

* 자료: 한국은행, 은행계정 총예금 기준, ()안은 총예금대비 비중

** 이자최고율: 한국은행 금통위 규정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16. 금년안에 가입하면 보호되는가(적용시점 관련)?

□ 금번 2001년부터 시행하는 부분보장제도는

-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뜻임.
- 예를 들어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 등도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1년 이후 발생할 경우 부분보장제도가 적용됨.

<예 1> '갑'금융기관에 1999년 3월에 6,000만원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하였는데, 2001년 5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시점이 2001년 이후이므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됨.

<예 2> 발행일이 2000년 11월이고 만기일이 2001년 2월인 '갑'은행 발행 1,000만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에 '갑'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2001년부터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됨.

17.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예금자별인가 계좌별인가? 금융기관별인가 지점별인가?
이자는 약정이자가 보호되는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 예금자 1인별로 적용됨

- 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족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가족은 별개의 1인으로 보아 각자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됨

□ 금융기관*별로 적용

* 甲은행, 乙은행, 甲종금사, 乙종금사, 甲상호신용금고, 乙상호신용금고 등

-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수 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은 1인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됨
- 보호되는 예금과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이 모두 있을 경우 보호되는 예금만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적용

-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되며
- 적용 이자율은 고객이 당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에 따르되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이내로 함
- 이자는 보험금지급 기준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함

□ 세전기준으로 적용

-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18.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는가?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보험 기금으로부터 돌려 받지는 못함

○ 그러나 돌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음